

eUCP의 본질적 함의와 조항해석적용의 과리조정:법해석학적 접근

김기선*

-
- I. 서론
 - II. 전자적 제시의 본질적 속성
 - III. 전자적 제시의 기술적 변용
 - IV. 전자적 제시후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
 - V. 결론
-

I. 서론 : eUCP제정의 의의와 효과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였던 산업혁명 후 근대적 의미의 경제의 중심에서 국제물품거래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던 신용장거래방식은 20세기말 세계경제의 불황과 함께 산업의 중심축이 신경제로 일컬어지는 전자정보네트워크 중심의 인터넷 경제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¹⁾ 거래의 양태가 다기화되자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국제거래질서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둔화되는 균열의 징후를 보이며, 신용장거래계는 유례없는 세기말적 증후군을 경험하는 듯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신용장거래관습이 과연 새 세기의 거래질서를

* 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무역학과 부교수

1) 인터넷 경제의 전반적 효과와 특성에 관한 시사점에 대해서는 Pamela Samuelson & Hal R. Varian, "The New Economy and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SIMS Working Paper, Univ. of California, Berkeley, July 18, 2001, pp.1~33; Michael Mandel, The Coming Depression, Basic Books, 2000, p.153 이하 참조.

지배할 수 있는 능동적 거래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만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향으로 2002년 4월 1일, 신용장거래계는 그 거래메카니즘의 중심원리인 「서류에 의한 權原의 이전」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운영기준에 전자정보네트워크 수단에 따른 「전자기록에 의한 權原의 이전」이라는 신조류를 과감히 채택, 소위 “전자적 제시를 위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보충 규정”(이하 eUCP)이라는 합목적적 형태의 규칙체계를 공포함으로써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서의 기술적 변용의 의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신용장거래계는 그 자체로 충분히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의 제시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권원의 서류화라는 축적된 경험²⁾속에서 신용장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지하고 있듯이 신용장거래관습은 거래주체들간의 반복적 행위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사실인 상관습의 형태이므로 불합리한 관행의 요소는 거래주체들이 승인·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연히 소멸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행이 탄생하는 과정을 거듭한다. 이러한 특성을 내포한 신용장거래관습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이 거래주체들간에 합목적성을 갖춘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장거래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법률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과 진보성을 구현³⁾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탄력성과 진보성을 받

2) 신용장거래방식은 비록 서류라는 제한된 정보체계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오랜기간 축적되어온 경험률에 따라 그 거래리스크의 예측이 가능하고 자체내의 정교한 리스크 전가메카니즘을 통해 적절하게 거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김기선, “효율적거래포트폴리오의 선택에 의한 국제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전략적 활용 방안”, 통상정보연구제3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12, p.3참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Margaret M. Gatti, “Maximizing Profita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2, 1998, pp.18~21; F. John Mathis, “Export Payment Terms Adjust the Risk to Exporters and the Cost to Importers”,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pp.17~20; Gary Mandell, “Export Credit Insurance: An Effective Marketing and Financing Tool”,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pp.20~21 참조.

3) 이들 요소는 신용장거래관습의 법전화 또는 규칙화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nry Harfield,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pp.1~11 참조.

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규로 그 구성원들의 거래질서를 규율하겠다는 차원의 법정신으로는 그와 같은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규의 시장역행성으로 말미암아 관련 법질서가 사실상 死文化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하겠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질서에 순응할 수 없는 법규가 관련 거래계를 지배하는 경우, 거래주체들은 사적인 합의에 입각한 여타의 계약행위를 통하여 당해 법질서의 영역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곧 관련 거래질서의 失效化를 초래하게 되듯이⁴⁾ 신용장거래계 역시 이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eUCP라는 규칙체계는 신용장통일규칙으로 하여금 시장의 역동성에 대해 적시성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계가 기술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인(動因)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간 신용장거래계를 규율하고 있었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상에 보충규정의 형태로 전자적 형태의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가 포함된다는 것은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간 거래당사자간에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분쟁과 마찰의 소재가 되었던 전자적 제시의 유효성 여부가 eUCP의 형태로 법규의 테두리에 들어오으로써 전자적 제시라는 사실의 문제(question of facts)가 법률해석의 문제(question of law)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특정 거래를 수행하는 관행이 무엇을 포함하며,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라는 문제는 소위 사실의 문제로서 이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상충되는 여러 상업적 직관이나 경험적 요소들의 증명을 통해 결정되어지지만, 일단 당해 특정관행이 법규화되면 이와 같은 사실의 문제는 종결되고 주어진 특정상황에 당해 거래관행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 즉 법률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⁵⁾

결국 기존의 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보충규정의 형태로 전자적 제시의

4)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2, pp.7~8 참조.

5) 사실의 문제, 법률해석의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E. Byrne, "Revised UCC Section 5-108(e):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CCLJ*, Spring, 1997, p.422 참조: 이러한 원리는 미국통일상법전 1-205조(2)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유효성을 포함시킨 근본적 취지는 신용장거래관습을 미래지향적 시장의 역동성에 적응시키려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⁶⁾, 나아가 전자적 제시에 관해 그 기준이 일정치 않아 모호하였던 법원의 판례의견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자적 제시의 관행에 대한 해석적용의 괴리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신용장거래관습에서의 외연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eUCP는 발효의 초기상태이므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eUCP에 관한 축적된 판례의견이 전무한 상태이고, 국제상업회의소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공식적 논평도 아직 발표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들마다 그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실무계에서는 eUCP의 채택·준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정법 체계의 인식에 있어서 첫번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는 법해석학적 연구방법⁸⁾을 통해 eUCP 규범에 함의되어 있는 체계, 의미, 상호관련성 등을 분석, 이를 통일적으로 모순없이 해석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학계와 실제 실무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6) ICC, eUCP: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1.0, ICC Pub. S. A., 2002, January, p.6; Bill cameron, "eUCP",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7, No.3, July-September 2001, ICC Pub. S. A., p.2 이하 참조.

7) Zahoor N. Dattu, "eUCP Watch:Are the Banks Ready?", *LC Monitor*, Vol.4, Issue 4, April, 2002, pp.1~6 참조.

8)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은 국제법학에 있어서 국제법규의 분석은 우선 법주체의 의도에 바탕을 두어야 그 효력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자세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연구방법은 국제법규를 오로지 합리적으로 입증가능한 증거에 의해서만 확인하려는 귀납적 연구방법과도 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eter VerLoren Van Themaat,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Hage, 1981, p.5 참조; George Schwarzenberger,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Stevens & Sons, 1967, p.24 참조.

II. 전자적 제시의 본질적 속성

1. eUCP와 UCP와의 연결성

eUCP는 전자기록의 제시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재된 제시를 수용하기 위해 현행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의 보충규정의 형태로 제정된 보칙으로서 그 주된 기능은 현행 UCP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⁹⁾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에 특별히 전자기록의 제시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재된 전자적 제시를 합의하였다면 신용장상에 eUCP 준거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¹⁰⁾

신용장거래계는 eUCP를 UCP내의 종속적 보충규정으로 존치시킨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eUCP에는 UCP를 대체하는 기능은 상정되어 있지 않으며¹¹⁾, 이에 따라 신용장거래당사자들은 UCP를 배제한 채 eUCP만을 당해 신용장거래의 독립적인 준거규칙으로 분리 채택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는 곧 eUCP는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규범인 UCP라는 청사진 위에서만 유효한 의미를 가짐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겠다.

한편, 신용장거래당사자간에 eUCP를 당해거래의 준거규칙으로 채택할 때, 요구되는 준거의사표시의 유효성이¹²⁾ 일견 UCP의 그것과 동일한 뉘앙스를 가진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은 eUCP 조항의 분석에서 크게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이 용례 속에서는 준거규범으로서의 eUCP의 법률적 지위가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보겠다. 즉 eUCP 1조

9) eUCP 1조 (a)항 참조.

10) 준거의사의 표시는 신용장상에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1.0 과 같은 식이면 족할 것이다.

11) ICC, *op. cit.*, pp.3~5; "eUCP Is Here", *LC Monitor*, Vol.3, Issue12, Dec, 2001, p.1참조.

12) eUCP 1조 (b)항:"The eUCP shall apply as a supplement to the UCP where the Credit indicated that it is subject to eUCP."

(b)항 상의 "where" 의 용례가 바로 그것이다.¹³⁾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첫째, eUCP는 UCP라는 신용장거래관습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보충규정이므로 UCP의 법원성(法源性)을 승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UCP 제1조에서는 당해 규칙의 준거문언의 삽입요건에 "where"의 용례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이미 UCP의 당초시안에 공식적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다. 즉 UCP는 이미 범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위 능동적 법규(living law)의 역할을 함으로 굳이 준거문언의 삽입을 UCP 적용의 선결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 근거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미 Schmitthoff 박사가 시사한 바와 같이¹⁴⁾ UCP는 그 적용의 근거에 있어 신용장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계약적 거래관습의 지위에서 합의의 요건을 반드시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규범적 거래관습 중 보편적 거래관습의 모습으로 법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eUCP는 보충규정의 지위에 불과하지만 법적확신(opinio juris)의 과정속에 있는 UCP를 그 존립의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eUCP 역시 UCP와 동일한 법원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eUCP는 UCP와 마찬가지로 거래주체들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과 효과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계약자유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일 신용장거래당사자간에 eUCP와 다른 법규 또는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특별한 반대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신용장거래를 규율할 수 있다는 소위 "디폴트 룰(default rule)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eUCP는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서류제시라는 특정 거래 행태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신용장거래당사자간에 당해 전자적 제시에 관해 일일이 합의할 수 없는 부분과 같은 소위 「빠진 조항(missing clause)」의 문제

13) 최근 발표된 두 연구들(김영훈, "전자적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상사법학회, 2002, p.540; 박성철,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6, p.9참조)이 이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나 견해차가 확연하고, 그속에 내포된 의미에는 침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14) Clive M. Schmitthoff, "Interna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of Letter of Credit", *Studies in Transnational Economic Law*, Kluwer, 1987, p.456 이하 참조.

로 신용장거래의 내용이 예측불가능하고 불투명해지는 경우 특별히 eUCP 이외의 법규를 명시하지 않는 한, UCP의 보충규정의 법률효력으로 당해 신용장거래를 규율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상의 논리에 비춰볼 때 UCP 뿐만 아니라 eUCP는 비록 前者의 보충규정의 형태로 민간단체인 ICC가 제정한 것이지만 이는 비단 입안자들에 의한 독단적 규칙이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인들의 합의에 의한 성문체이며, 범세계적인 수락과 더불어 규칙으로서의 집행 가능성이 하나로 조화되는 과정¹⁵⁾속에 있음을 묵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eUCP와 UCP와의 포섭성

eUCP와 UCP와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eUCP 2조는 그 (a)항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즉, “eUCP에 준거하는 신용장(eUCP 신용장)은 UCP 준거문언의 명시적 구현없이도 UCP에 준거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UCP는 신용장거래당사자간에 보편적인 지지를 획득한 이상, 예컨대 SWIFT를 통한 신용장의 개설과 통지 등에 있어서도 SWIFT신용장상의 준거의사표시 유무에 상관없이 UCP가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바, 하물며 UCP의 보충규정인 eUCP에 준거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UCP는 당연 적용된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해석은 일응 타당한 것이지만, 본 조항은 비단 이에 국한되지 않는 eUCP와 UCP간의 중층구조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이 조항은 eUCP 1조(b)항과 상응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eUCP는 UCP내에 편입된 종속적 보충규정이므로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은 UCP를 배제한 채 eUCP만을 당해 신용장거래의 독립적인 준거규

15) 법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1차적으로 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수긍이며, 이와 더불어 부차적으로 그 강행성에 있다; William Howarth, "Contract, Reliances and Busin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7, p.122 참조.

16) ICC 국내위원회, eUCP:전자적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 대한상공회의소, 2002,4, pp.9~10; 강원진, "전자적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eUCP)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1호, 2002.5, p.242.

칙으로 분리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 조항은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eUCP의 현시점에서의 한계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UCP는 UCP를 보완하는 형태에 그쳐 있으므로 법규로서의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완결성을 갖춘 UCP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거래주체들로부터 법적 수급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eUCP의 적용 그 자체는 자신의 존립 근거인 UCP의 당연적용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 조항은 eUCP의 UCP에 대한 포섭적 기능을 제시해주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관점에서 사회 법규범의 변화상을 논의할 때, Hayek 교수의 통찰에서처럼¹⁷⁾ 사회구성원들이 준수하는 일정한 행위준칙이 존재할 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행위준칙들이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낼 때에는 그 원천이 되었던 행위준칙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위준칙간에는 기술적 또는 사회적 격차(gap)가 생기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함에 있어 어느 행위준칙이 그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행위준칙간에는 소위 포섭현상(generation lap)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존립의 원천이 되었던 행위준칙으로부터 종속·파생되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생성·창출된 새로운 행위준칙은 장기적으로 모든 요소가 가변적인 상황에서 그 기능의 적절성과 역동성으로 인해 당초의 행위준칙들을 감싸안는 포괄적 기능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이다.

신용장거래에 있어 사인(私人)간의 신용장거래관습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지배해왔던 UCP 역시 이러한 보편적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인 바,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장거래관습 개편의 주도권은 UCP로 대표되는 신용장거래관습을 전제로, 이를 포괄하는 형태의 eUCP로 이양되어 갈 것임을 본 조항은 상정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동조(c)항의 규정¹⁸⁾을 통해 구체

17) Friedrich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ledge & Keegan Paul, 1982, p.37 이하 참조(박세일, 전게서, p.49)

18) 신용장거래당사자간에 eUCP 신용장을 채택하게 되면 eUCP 신용장의 포괄성으로 인해 종이서류의 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없이도 UCP의 당연 적용을, 전자기

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도적 보충성에 따른 포섭능력을 eUCP 적용의 파생효과라 전제하고 이를 “eUCP의 포섭성”이라고 정의한다면 eUCP 2조(a)항과 (c)항은 eUCP의 포섭성을 준용하여 UCP와의 상호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하겠다.¹⁹⁾ 이러한 eUCP의 보충성과 포섭성을 정의해내지 않고서는 eUCP의 모든 조항은 어떠한 무모순성도 보증해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는 이러한 eUCP의 포섭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eUCP는 기존의 UCP의 많은 영역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대체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두 범규범간의 충돌로 이어져 오히려 신용장거래 질서는 비효율적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무차별적 대체 현상을 방지하고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적 확대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eUCP의 포섭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대책이 바로 eUCP의 적용방식에 UCP와의 동조성을 부여하는 eUCP 2조(b)항이다.

3. eUCP와 UCP와의 동조성

eUCP 2조(b)항은 보편적 시장질서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eUCP의 포섭성 원리의 적용방식에 동조성(homothety)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UCP와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두 거래관습 상호간의 경합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UCP와 eUCP를 공존시키는 통합과 조정의 묘를 구현시키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eUCP가 적용되는 경우, 이들 세부조항들은 UCP의 적용과 다른 결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에 효력을 갖는다”

록의 제시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결합에 의한 전자적 제시에는 UCP를 전제로한 eUCP의 추가 적용을 받게 된다.

19) 만일 역으로 UCP가 eUCP를 “기능면”에서 포섭한다면 동조(a)항과 (c)항은 그 의미를 잃는다. 즉 UCP 준거의사만으로 eUCP의 당연적용이 가능하다면 종이서류의 제시에는 UCP가, 전자기록 및/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결합에는 eUCP가 자동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장거래제가 이와 같은 논리를 우회하여 현재의 규정을 채택한 것은 그 자체로서 eUCP의 기능면에서의 포섭적 능력을 수긍한 것이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 eUCP의 12개 조항들은 UCP에 추가되는 부분의 적용이 주된 골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상충되어 대체하는 성격의 조항들은 아닌 것이다. eUCP의 궁극적 의도는 UCP로 지배되고 있는 신용장의 효용에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와 노력이 그대로 반영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UCP가 적용되는 경우 이들 12개 세부조항들은 UCP의 적용으로 해석되어 나오는 결과와 다른 해석결과를 낳게되는 경우, 즉 전자적 제시에 관한 특유한 부분에만 추가적으로 그 유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확대된 해석영역 이전의 부문에 대해서는 UCP의 적용에 따른 결과와 정확히 그 맥락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경제논리로 해석한다면, eUCP의 세부조항들의 적용결과는 신용장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해석적용의 기회 집합의 확대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UCP적용에 의한 신용장거래 질서라는 함수에 대해 eUCP가 동조성을 가지면서 확대되어 가는 확장경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신용장거래관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 두 법규의 적용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동일하다는 의미와 상응한다.²¹⁾ 궁극적으로 이는 일종의 법효율의 증대라는 의미와 그 맥락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주지하고 있듯이, 새로운 거래관행들의 생성과 적용에 있어 당해 거래관행의 활용과 준수는 기존의 반복적으로 채택되어 왔던 거래관습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래관행들이 편입되어 새로이 확대 개편되는

20)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에 따르면, 「eUCP가 적용될 경우 UCP와 “상충”될 때에는 eUCP를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 조항에 접근하고 있는바, 이는 eUCP와 UCP와의 관계를 호도할 우려가 있으며, eUCP의 제정의도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이러한 과대해석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해는 eUCP의 1차시안에 사용된 ‘conflict’라는 용례에서 1차적으로 비롯된 듯하지만, 당해 시안의 전체 구조속에서 eUCP는 전자기록의 제시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결합에 의한 전자적 제시에만 적용된다는 문구를 통해 볼 때 UCP와의 상충요인은 상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해 용례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삭제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Black’s law Dictionary에 따르면 “prevail”의 법률적 의미는 “to be effective” 또는 “to be in general use or practice”, “to be commonly accepted or adopted”의 뜻으로 「법규가 유효하다」 내지는 「공히 효력있다」는 의미이므로 “우선적용”이라는 법규 우선순위 개념은 이 용례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1)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의 연구에 의해 확충하도록 한다.

과정을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든 사회현상의 경험틀이라 하겠다. 만일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관행이 기존에 수긍되었던 거래관습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이에는 소위 행위의 반복성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행위의 반복성에 의한 자생적 시장질서가 구축되지 않은 소위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제도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초래되어 거래주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결과, 더 이상 그 작위적 시장질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용장거래계는 eUCP의 제정을 통해 과학의 힘으로 새로이 태동하는 여러 관행들을 통해 기존의 신용장거래질서가 재편성 내지 재조직될 개연성을 수용하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은 eUCP의 포괄적 보충성이라는 포섭성 특질에 UCP와의 동조성 기준이라는 제약요건을 부과하여 이들 거래관행간의 경합과 충돌을 제거함과 동시에 법규적용의 유효성에 있어 해석의 쏠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균형의 추를 달아 놓음으로써 신용장거래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동인(動因)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Ⅲ. 전자적 제시의 기술적 변용

1. 추상성의 안정적 보전

eUCP 5조(a)항에서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eUCP 신용장에는 반드시 전자기록의 제시장소가 명시되어야 하고, 전자기록 및 종이서류의 혼용을 허용하는 eUCP 신용장에는 반드시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도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볼 때 전자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eUCP 신용장은 반드시 전자기록이 제시되어야 할 장소, 요컨대 전자주소가 명시되어야 함과 아울러,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용되어 제시될 때에는 당해 eUCP 신용장상에 전자주소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의 제시장소도 병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자적 제시는 일거에 제시될 필요는 없겠지만²²⁾, 반드시 동일한 은행에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조항은 UCP 10조(b)항²³⁾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규정으로써, 이 두 조항들을 단순 비교해 본다면 일견 자유매입관행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받을 것임을 관찰할 수 있다.

eUCP제도에 있어 이러한 자유매입 여지의 제동은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의 축소지향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한정추리가 가능해진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매입은 신용장거래의 추상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본래 거래가 추상적이라는 개념은 서류집약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정의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추상성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의무의 이행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에 대한 확약을 상대방에게 구체화시킴에 있어 당해 확약이 자유롭게 제3자들에게도 유통가능하게 되는 속성을 의미한다.²⁴⁾ 「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은 서류를 사고 파는 것이지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²⁵⁾라는 명제가 수긍 가능했던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확약이 주로 서류상에 문언화 되어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했던 것이지 서류 자체가 추상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보증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장거래계가 eUCP의 제정을 통해 전자기록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피상적으로 전자기록을 서류라는 개념 속에 편입시킨다는 서류의 확대해석 방침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전자적 제시 그 자체 역시 개설은행 지급확약의 유통 가능성에 포괄될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특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추상성은 서류보다는 확약의 유통성(negotiability)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 매입은행 등이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와 같은 유통성을 전제로 한 추상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22) eUCP 5조(b)항 참조

23) UCP 10조(b)항:“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연지급·인수 또는 매입이 수권된 은행(지정된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어떤 은행도 지정된 은행이 될 수 있다. ...”

24) 추상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 1977, pp.454~457 참조.

25) F. M. 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p.14.

러한 특질의 매입·유통성을 전자거래에 비취본다면, 전자거래환경은 전통적 관점의 신용장거래 환경에 비해 오히려 그와 같은 자유로운 매입·유통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전자거래환경에서는 주지하다시피 고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매입희망자가 자기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거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전통적 관점에 있어서의 자유매입의 기본 기능에 일견 더 적절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CP가 서류의 전자적 제시와 관련하여 추상성원칙으로부터의 일부 이탈을 무릅쓰고 eUCP 신용장상에 지정되지 않은 거래주체로의 확약유통성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전자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 환경에서는 익명성의 무수한 거래주체들이 소위 파편화 되어 존재함으로써 전통적 신용장거래에서 부여한 매입·유통성이라는 위계화된 구조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 자체로써 신용장거래 질서에 체제위협적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 하겠다.²⁶⁾ 따라서 전자거래환경에 있어 기술적·사회적·법적·도덕적 인프라가 신용장거래계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자유매입·유통성에 대한 제약은 어느 시점까지 존속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실무계는 이를 우회하는 관행을 발견해 나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무계에서는 매입지정의 해제(release)나 재매입(renego)관행을 통해 수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거래은행을 선택하는 권한을 무리없이 행사해오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공공연하고 불편부당한 관행을 전자적 제시의 요건에 대입해볼 때 수익자의 선택에 의해 개입한 은행은 전통적 신용장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범위 밖에 놓여 있어 다분히 수익자 의존적²⁷⁾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오히려 서류검토 후 우편소요일

26) 매입방식에 있어 개설은행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은행이 무작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전자적 제시에 있어 그 객체가 되는 전자기록은 그 특성상 전자거래 인프라가 아직 불비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본의 재생산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double presentation의 개연성이 커진다고 보겠다.

27) 지정된 은행 이외의 수익자 거래은행이 개입하면 당해 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문제발생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대신 수익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여신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S. A., 1989, p.40.

수와 같은 서류송부의 기간부담 요인이 전자적 송신이라는 즉시성에 따라 경감됨으로써 유효기일에 관한 압박요인²⁸⁾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와 질 것이며, 나아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와의 매매계약시 신용장하의 매입에 관해서 만이라도 수익자의 은행 선택권 요청을 개설의뢰인이 수락해준다면²⁹⁾ 그간 수익자 의존적이었던 재매입 의뢰은행 등은 개설은행의 협약범위 내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실제적 측면에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나 수익자의 효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국 eUCP 5조(a)항의 적용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추상성의 기술적 또는 정서적 변용은 있겠지만, 실제 변용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오히려 추상성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2. 전자적 제시의 보완기재

1)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

전자적 제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eUCP 조항 중 주목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eUCP 5조(c)항의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 요건이다. 이에 따르면,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이 하나 이상 제시될 경우 수익자는 서류의 제시은행에게 제시가 완료될 시점을 인식시켜주는 통지를 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완료의 통지는 전자기록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종이서류의 형태로도 할

28) 재매입의 경우 수익자의 요청으로 개입한 재매입 의뢰은행은 유효기일까지 신용장상에 지정된 은행에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ICC, Opinions(1989-1991) of the Banking Commission, ICC Pub. S. A., 1991, p.38. 지정된 매입은행 해제의 경우 수익자 거래은행은 당초의 유효기일까지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Ibid;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S. A., 1991, pp.105~106)

29) 매입의 지정과 관련하여 신용장을 취급할 권리는 당연히 개설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사용방법과 은행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외환거래, 또는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익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알려주어 동 은행을 통하도록 하는 관행도 형성되어 왔다. 이 관습은 불합리한 관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실무계에서는 개설은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익자의 요구에 의한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수용해 주고 있다; 요하네스 짜안(강갑선 역), 무역결재론, 법문사, 1996, pp.58-59(노동환,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국제표준은행 관행 적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40에서 재인용)

수 있다. 이때 완료통지는 반드시 당해 완료통지가 연관되어 있는 eUCP 신용장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eUCP 신용장하에서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를 혼재시켜 제시할 경우도 있고, 전자기록만으로 서류를 제시할 경우도 있다. 前者의 경우 전자기록의 전자적 제시와 종이서류의 물리적 제시간에는 소위 우송속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수신시기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제시들은 유효기일(또는 서류의 제시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이라는 기간제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수신자의 유효성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자적 제시와 물리적 제시간의 격차요인을 제거할 부가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後者の 경우에도 전자적 제시의 특성상 전자기록 발급의 소관기관들로부터 별도로 각각 그 제시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루트로부터 제시된 전자기록들은 유효기일(또는 서류의 제시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내에 취합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제시 특유의 파편화에 유의미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인 것이다.

신용장거래계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해 전자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 자신이 이를 주도적으로 취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류제시가 이루어지도록 수권한 eUCP 신용장과의 연관성을 확인시키고, 서류제시의 일관성을 유지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그 취합의 과정 속에서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의 내용과 신용장 조건과의 상위점을 식별하도록 유인, 서류하자에 대한 치유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하겠다.

2) 비판적 시각의 수용

Bill Cameron은 Documentary Credits Insight 紙에 기고한 글³⁰⁾에서 매입방식의 eUCP 신용장하에서 수익자의 완료통지의 의무는 매입방식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여 수익자의 부담가중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바라봄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자기중심적

30) Bill Cameron, " eUCP",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7, No.3, July-Sept, ICC Pub. S. A., 2002, pp.3~4참조.

가치판단의 하나이겠지만 그는 매입방식에 있어 지정된 은행이 매입할 때와 파생관행의 형태인 지정의 해제와 재매입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後者의 경우를 함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지정의 해제상황이나 재매입의 상황 모두 개설은행의 수권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이후 eUCP 신용장에서 수권된 지급확약의 범주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수익자는 1차매입이 이루어진 서류에 대해 재차 이를 취합할 의무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전자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eUCP제도에서만 비롯된 의무가 아니라 전통적 신용장거래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 수익자나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당연히 부담하였던 절차였다 하겠다. 따라서 지정의 해제나 재매입 의뢰로 1차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든 수익자의 거래은행이든 이들 서류를 취합해 수익자 명의의 완료통보를 다시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재매입의 경우)이나 개설은행(지정의 해제의 경우)에 제시, 그것이 유효기일내에만 수신·도달된다면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은 우려, 즉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는 기우가 될 것이며, 오히려 이는 신용장 거래계가 묵시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논리적 무모순성의 의도(consequential intent)속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무역학계 일각³¹⁾에게 제시되고 있는 완료통지의 무의 수익자에 대한 부담가중이라는 논리는 eUCP 규정판단에 있어 과대해석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 신용장거래에서도 그러하듯이 신용장조건이 요구하는 일치서류의 취합은 UCP에 규정되어 있지만 않았을 뿐 수익자가 해야 하는 묵시적 차원의 기본적 거래행위의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다양한 거래선으로부터 여러 루트로 상이한 형태를 지닌 전자기록 및 종이서류가 제시될 때 이것을 수습·정리·취합할 의무가 오히려 은행에게 주어진다면 은행의 부담은 이전보다 더 가중될 뿐더러 「파편화된 서류들의 취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완료통지의 절차가 은행으로 전가된다면 이는 결국 신용장거래에서의 수익자의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부추길 뿐

31) 최석범,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p.101 ; 강원진, "전계논문", p.255 ; 박성철, "전계논문", pp.13~14.

이라 하겠다.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모든 편의성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과 수권 범위라는 신용장 거래질서의 위계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수익자의 완료통지는 곧 신용장거래 관습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기재의 역할기능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유효기일의 엄격성과 완료통지와의 관계

일반적인 관점에서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대금의 지급·인수·매입을 받기 위해 신용장상에서의 의무를 이행할 최종기일인 동시에, 개설은행 측면에서는 자신의 지급확약이 강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대금지급이행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유효기일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하에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은 그 자체로서 자동 소멸된다.³²⁾

이러한 유효기일의 엄격성은 eUCP에서 강한 의미로 재확인되고 있다.

1) eUCP 5조(e)항의 성격

eUCP 5조(e)항의 전반부에 따르면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영업중이긴 하지만, 은행의 시스템이 유효기일(또는 서류 제시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 : 이하 유효기일로 통칭함)의 최종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제시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당해 은행은 영업일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고 유효기일은 은행이 관련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실제적으로 은행이 영업중이나 은행의 시스템이 닫히는 상황이라면 은행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수익자 탓으로나 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는 폐쇄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 조항의 전제조건은 현실적으로는 은행이 정상영업

32)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 “1995 미통일상법전 제 5조의 개정과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에 주는 효과분석”, 무역학회지, 제22권 3호, 한국무역학회, 1997, 11, pp. 244~297 참조.

중이고 은행시스템만 가동이 중지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³³⁾에 의한 유효기일 자동연장을 규정한 UCP 44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불가항력에 의해 은행영업이 강제 중단되어 유효기일 만료의 구제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UCP 17조와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 조항의 본질은 전자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전자거래환경 특유의 리스크를 취급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이를 불가항력으로 처리하지 않고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첫 은행 영업일까지 자동연장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은행의 실제 물리적 영업시간과 이 시간중의 은행시스템의 가동중단을 별도로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되므로, 오로지 전자기록의 전자적 제시에만 그 효력이 있다. 만일 종이서류의 제시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이들 종이서류는 유효기일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은행의 물리적 영업시간내에 이미 제시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이 조항 적용에 따라 유효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상황은 반드시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전자기록과 함께 동시에 은행에 제시될 때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기록은 이미 유효기일내에 제시된 후이고, 수익자의 완료통지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서류일 때, 이의 전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당해 완료통지의 제시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자의 완료통지만이 이와 같은 특유한 리스크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은행컴퓨터 시스템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별도의 적용기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 조항의 마지막 문구이다.

2) 유효기일의 엄수와 완료통지의 발신주의

eUCP 5조(e)항의 결미문구에 따르면, “...제시되어야 할 전자기록 중 남아있는 전자기록이 완료통지인 경우, 이는 전기통신수단 또는 종이서류로도 할 수 있지만 이때 완료통지는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시점 이전까지 발신되어야 적기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3) 이날들은 은행 자체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이다.

이 규정은 수익자의 완료통지의 본질적 의미 및 전자적 제시하의 고유 리스크와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서의 유효기일의 엄격성과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완료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전자기록이고, 이때 은행은 영업중이나 은행의 시스템이 여하한 이유로든 가동중단된 경우, 그리고 그 시점이 유효기일의 최종일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하 특수상황이라 통칭함)하에서는 수익자의 완료통지는 반드시 서류(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완료통지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자적 제시에 있어 파편화된 서류의 제시를 취합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본 조항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일종의 구체화된 형태를 갖춘 수익자의 유효기일 영수의 의사표시라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완료통지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의 형태를 갖추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논의하고있는 특수 상황 하에서는 전기통신수단으로도 그 의사 표시가 가능함으로 구두의 형태인 전화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표시의 본질상 특수 상황하에서는 구두 또는 서면 어느 것이라도 그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³⁴⁾

둘째, 수익자의 완료통지는 유효기일 영수의 의사표시이므로 그 유효성 여부는 시기의 적절성, 즉 유효기일내의 제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기록과 함께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제시될 때에는 이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효기일을 영수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동연장이라는 조치가 취해지지만, 아직 제시하지 못한 수익자의 완료통지는 그 시점까지 서류의 취합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것만을 별도로 송신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유효기일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적 제시의 경우에는 은행의 시스템이 닫히는 것은 은행이 영업을 종료

34) 이러한 해석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항상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전자적제시의 상황(동조(e)항 이와의 상황)또는 동조(e)항의 도입부에 상정된 상황(전자기록과 함께 완료통지가 함께 제시될 때)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구두통지가 유효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구두통지의 유효성은 오로지 동조(e)항의 결미문구에 의해 상정된 특수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하겠다. eUCP 5조(e)항의 해석에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의 수익자의 완료통지라는 의사표시는 신속성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 형태를 갖춘 것이라면 어떤 형태라도 무방하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요건이 허용된 것이라 판단된다.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시스템이 닫히는 순간부터 다시 개방되는 순간 직전까지의 시간대는 이전 영업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대로 인정해주므로 이러한 특수상황에서의 수익자의 완료통지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전 영업일, 즉 유효기일의 동일선상내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셋째, 이같은 특수상황에서 완료통지가 전기통신수단 또는 종이서류로 급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유효성을 결정함에 소위 발신주의 또는 도달주의 중 어느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가 라는 선택의 문제에³⁵⁾ 봉착한다. 동조항의 결미문구에 따르면, "...provided that it is sent before the bank is able to receive an electronic record." 라는 취지를 통해 이와 같은 특수 상황하에서는 완료통지는 발신주의(mail-box rule)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 근거는 다음의 두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전통적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르면³⁶⁾ 계약의 성립의사 표시는 일반원칙상 도달주의(time-of-receipt rule)를 채택하지만 그 의사표시가 발신과 수신 시점에 격차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거래주체간에 계약성립의 의사표시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소위 상업적 편의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컴퓨터 정보재에 관한 통일법(UCITA) 102조(60)의 발신의 정의에 따르면, 전송자가 전송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절히 주소를 명기하여 수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적절히 송부, 그것이 「도달할 수 있었을 시간내에 수신된다는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는 유효한 발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근거에 준해, 논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수익자의 유효기일 업무의 의사표시가 확실하고, 그 의사표시가 적절히 송부되어 도달할 수 있었을 시간내에 수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유효하다면, 은행시스템이 다시 가동

35) 전자거래환경에서는 전자문서의 전송속도가 실시간 동시적인 점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e-비즈니스 연보, 산업자원부, 2002, p.501)하더라도 송신자 측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이같은 특수상황하에서는 완료통지는 전자적 형태의 제시와는 관련이 없는 의사표시의 문제이므로 이 둘간의 선택은 수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6) 보다 자세한 내용은 A. G. Guest, *Anson's Law of Contract*, 26 ed., Clarendon Press, 1984, pp.39~44 : F. Pollock, *Principles of Contract*, 7th ed., Fred B. Rothman & Co., 1988, pp.35~41.

되기 전까지만 발신이 된다면 유효기일의 엄격성은 충족이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있어 어느 거래주체에게 부담 또는 리스크를 증가시켰을 때 이를 다른 차원에서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당해 법규는 수급 가능한 효율적 법규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유효기일의 엄격성 기준 속에 수익자 완료통지의 유효성을 발신주의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은 eUCP의 법효율 증진에 큰 의미를 준다 하겠다.

4. 전자기록의 유효성과 이의 처리과정

1) 서류검토와 수리거절의 통보

(1) 유효한 수신과 제시

eUCP 7조(a)항은 서류검토의 개시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i) 서류검토를 위한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신된 날 다음 첫 은행 영업일로부터 개시된다. ii) 서류의 제시기간이나 완료통지가 연장되는 경우 서류검토기간은 서류를 제시받는 은행이 완료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날 다음 첫 은행 영업일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 관점의 신용장거래에서 서류검토의 개시는 서류제시라는 실제적 행위자체로부터 비롯되지만, eUCP 신용장거래에서는 전자매개체로의 입력 및 송신과 이의 유효한 수신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적 제시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수신의 결정은 도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수급 가능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eUCP 3조(b)의 v)에 따르면 수신이란 전자기록을 수령할 자격을 갖춘자(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련 전자기록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가독가능성)로 정보시스템에 진입한 때³⁷⁾를 말한다.

37) 이때 실무관계자들이 당해 정보시스템에 전자기록이 수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라도 수신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UCITA, Section 215 (a)항

이때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함께 수반되거나, 또는 차후에 별도로 수신됨으로써 전자기록들의 수신은 서류검토를 위한 유효한 제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요컨대 서류검토를 위한 유효한 전자적 제시는 유효한 수신을 전제로 하며 이는 수익자의 완료통보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된다 하겠다.³⁸⁾

(2) 수리거절의 통보

eUCP 신용장하에서 서류(전자기록/종이서류)가 유효하게 제시되면 은행은 UCP 1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서류접수 익일후 7일간이라는(이를 전자적 제시에 준용하면, 완료통지 수신 익일후 7일이 될 것임)서류검토기간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게 되는 바, 이때 당해 서류들이 eUCP 신용장의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지 않으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들 불일치서류들을 취급하게 된다. 이의 처리과정에 대해 eUCP 7조(b)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된 은행이 전자기록들을 포함하여 제시된 서류들의 거절을 통보하고, 전자기록 처분을 위한 거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당사자로부터 지시사항들을 수신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은행들은 기 반환치 못한 종이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어떠한 책임없이도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관련 전자기록을 처분할 수 있다.”

UCP 14조에 따르면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된 은행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신용장조건과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불일치 내역을 총망라, 서류의 처분 등 그 행방을 표시해준 후 전기통신수단, 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서류거절의 사유를 서류 또는 구두의 형태를 갖추어 반송·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CP 신용장거래에서도 UCP 14조의 불일치서류 취급요령이 당연 적용되는 바, eUCP 신용장거래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은 추가적 기준을 더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38) 수익자의 완료통보는 서류검토개시를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전자적 제시의 총체적 유효성을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진위판명이 이루어져야하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자료의 손상·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eUCP 5조(f)항, 11조 참조). 제시되는 전자기록들은 그 수권의 원천이었던 eUCP 신용장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eUCP 5조 (d)항)

(3) 30일의 의미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특별히 반대합의가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은 일단 발급되면 권리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들 원본서류를 은행이 거절하게 되면 은행은 당해 거절서류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³⁹⁾, 이의 소유권은 수익자(또는 서류제시자)에게 귀속된다. 은행이 서류거절시 일단 접수하였던 서류에 대해 그 행방과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주어야 하는 이유도 이에 근거한다. 한편 수익자는 거절·반환된 서류들에 대해 유효 기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서류치유의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유효 기일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신용장하의 추심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관련서류가 전자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바, 그 대안적 방안이 「30일」이라는 기간의 적용이라 하겠다.

eUCP 거래에서 「30일」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기록은 종이서류와는 달리 서류의 거절통보시 수익자가 이를 구태여 반환받지 않더라도 원본의 재생산 능력이 있으므로 불일치 사항의 보완 기회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이를 반환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불일치 전자기록은 당해 eUCP 거래에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상실한 채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불일치의 통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또는 서류 제시자)로부터 보완·치유된 전자기록을 재전송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수령받지 못하면 이미 그 불일치로 인해 무의미해진 당해 전자기록을 은행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 권한행사를 위한 최대 대기기일이 30일의 첫 번째 의미라 하겠다.⁴⁰⁾

3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Robert M. Rosenblith,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ccount Party : Unexplored Legal Problems," *Brooklyn Law Review*, vol.56, 1990, p.84 이하참조.

40) 당해 조항의 30일은 컴퓨터정보재화의 전자거래를 규정한 미국의 UCITA상의 불완전이행의 추완을 위한 최대허용기일인 30일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eUCP 신용

둘째, 전자기록의 하자통보를 받은 수익자는 유효기일이 남아있는 경우 그것이 치유가능한 하자라면 거절 통보된 전자기록을 다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수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 치유기간의 최대활용기일이 30일이다. 수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 30일은 남아있는 유효기일의 여유분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기일만큼 축소될 것이지만, 그 최대허용기일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전자기록에 있어 그 데이터 콘텐츠의 불일치 여부에 대해 수익자와 은행간의 시각차이가 현저할 때 이의 항변은 전자기록이 변조·수정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판단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종이 서류의 경우 그것이 원본인 경우 이는 무결성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를 파괴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항변을 위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는 일단 은행시스템에서 삭제된 후 또 다른 원본이 재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제시된 전자기록상의 제반 사항들은 유효한 증거로서의 보전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30일은 서류검토에 있어 불일치사항에 시각차이가 있을 때 서류 제시자나 서류검토자간에 항변을 위한 증거보존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수익자는 은행으로부터 전자기록이 거절될 때 유효한 증거자료로서 이를 보존하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책임없이 자신의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당해 전자기록을 처분하게 된다.

장거래 역시 광의의 전자거래속에 포괄된다는 차원에서 이 30일은 전자적 형태의 메시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상징적 최대기간이라 보겠다. UCITA Section 615-(e)항 참조.

IV. 제시 후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⁴¹⁾

전자기록이 제시된 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자기록이 변형·손상·붕괴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비단 eUCP신용장거래에서만 아니라 광의의 전자거래환경 모두에 있어 주된 관심사이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자기록 등의 변형·손상·붕괴의 리스크는 이를 방어하는 기술이 계속 뒤이어지지만, 이를 원천적 차원에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 리스크는 새로운 모순의 연속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전자거래환경에 있어 이와 같은 특유의 불확실성이 완벽한 의미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 리스크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분담되거나, 또는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전가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판단 과정은 그 관련 법규들의 입안에 있어 거래주체들간에 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CP에서는 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감히 도입, 신용장거래관습에 편입시킴으로써 여타의 전자거래계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⁴²⁾

eUCP에 규정된 이와 같은 특유의 리스크 처리기준이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면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41) 전자기록의 corruption은 현재 「변형」이라는 번역이 지배적이지만 컴퓨터 관련학계에서는 「손상」 또는 「붕괴」라는 용례를 섞어쓰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변형·손상·붕괴라 통칭하기로 한다.

42) 클린턴 정부의 'Magaziner Report'에 의해 고조되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거래법의 제정은 최근 UCITA, UETA, UCC Section-2B(License)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리스크는 입안자들의 여러 견해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다 이들 법규에 우회적으로만 유추될 뿐 그 어떤 규정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1. 전자기록에 있어 은행의 면책범위와의 관계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라는 리스크는 전자기록에 있어 은행의 추가적 면책범위를 다루고 있는 eUCP 12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은행은 상업적으로 수증 가능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의해 확인가능한 「전자기록의 수신」, 「진위판명의 여부」, 그리고 「eUCP신용장과의 동일성여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외의 다음 상황 즉, ①전자기록 발급자의 자격과 실체 ②정보의 출처 ③전자기록의 완전성과 변경불가능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범위를 누린다는 것이다.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는 이 중 세 번째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전자기록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 전제는 은행의 정보시스템이라는 인프라는 항상 어느 경우에도 상업적 관점에서 유용한 환경으로서의 안정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정보시스템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은행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이의 처리과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라 하겠다. 만일 이의 처리과정까지 은행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모순의 연속」인 이들 리스크에 대한 처리부담 즉, 관련 서버의 유지, 보수, 업데이트 등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관계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은행이 당해 리스크의 전담 기구화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용장거래관습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용장거래계는 이 리스크에 대해 그 부담책임과 처리과정으로부터 은행을 독립시킴으로써 신용장거래로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개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eUCP 11조의 첫번째 합의

eUCP 11조에 따르면 (a)항에 “전자기록이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된 은행에 의해 수신된 후 변형·손상·붕괴된 경우, 은행은 서류 제시자에게 통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b)항에 따르면, “만일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i)서류검토기간은 일시정지되고, 이는 제시자가 당해 전자기록을 재제시할 때 다시 개시된다. ii)지정된 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된 은행은 반드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 공히 자신의 재제시 요청의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이들 중 한 은행에게⁴³⁾ 서류검토의 일시정지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iii)만일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당해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 처리할 수도 있다. iv)이때 어떠한 기간제약도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술한 바와 같은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에 관한 은행의 중립적·독립적 면책논리를 중심으로 신용장거래에서의 당해 리스크의 처리과정을 대단히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해석의 핵심은 “may”라는 조동사의 채택을 통한 「은행의 선택권」 부여라는 전제조건에 응집되어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의 의미를 살핀다면, 은행은 전자기록의 완전성, 변경불가능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형·손상·붕괴된 전자기록을 유효한 제시라 간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거절해버린다면 이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중심점이자 연결점의 역할을 하는 은행의 중요성, 의존성, 도덕성 등의 차원에서 수익자, 개설의뢰인을 비롯한 신용장의 실질적 권리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당해 리스크의 발생시 거래의 회복을 위해 은행의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의 처리에 관한 한 은행의 호의의 행위으로써 취급할 수는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⁴⁾

43)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infra, (3)eUCP 11조의 2차적 합의 참조.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로 인해 신용장거래의 약인(約因)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지만, 이 거래에 은행이 다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신용장조건들의 일관성 유지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기간적 제약, 즉 서류검토기간의 일시유예 등과 같은 신용장거래 이행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적 필요성이 동조 b항 i(서류검토기간의 유예)와 b항 iv(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선적일 등의 변경불가능한 일관성 유지)에 구체화된 것이라 보겠다.

3. eUCP 11조의 두번째 함의

한편 eUCP 11조의 b항 ii는 지정된 은행이 거래회복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행동방향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지정된 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된 은행은 반드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 공히 자신의 재제시 요청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들 중 한 은행에게 서류검토의 일시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한 국내연구에서는⁴⁵⁾ 본 조항의 분석에 있어 재제시 요청의 사실은 확인은행과 개설은행에게 공히 통지하도록 규정함에 비추어 서류검토기간의 일시정지를 한 은행(it)으로 표현한 부분은 주술관계상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공히(them)”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용례 속에는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의 리스크 처리과정에 있어 또다른 함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⁴⁶⁾

44) 이와같은 은행의 재량에 따른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조항의 궁극적 해석방안은 은행의 재량행위에 개설의뢰인의 후발적 권리포기가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결된다 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fra, (5)eUCP 11조의 적용과 효과 참조.

45) 최석범, 전제논문, p.100

46) 신용장거래계를 대표하여 전문 법조인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주요 앵글로색슨계의 eUCP입안자들이 전세계 무역인들의 수락과 수궁을 촉구하는 신용장거래관습의 새로운 증거규범의 선포에 있어 이와 같은 유아적 문법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종의 넌센스이며, 이는 당해규정의 실무절차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호도할 우려가 있는 논점일탈의 판단오류이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확인은행의 확인(confirmations)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보증하는 형태이지만, 이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연대보증」의 형태라기보다는 개설은행의 파산, 결제불능과 같은 채무불이행 사태의 발생에 대해 이의 변제를 보충적으로 확약하는 「별개의 독립된 보증」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행이 사실상 유효한 상태에 놓여 있어 개설은행의 변제자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을 경유하지 않은 수익자 또는 지정된 은행의 지급이행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는 연대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은행과 동시에 지급이행의 청구를 수락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확인은행은 지정된 은행이 자신에게 지급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 지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시 주채무자인 개설은행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개설은행에 대해 먼저 그 지급이행의 청구를 집행할 것을 항변할 권리가 있다.⁴⁷⁾

다시 말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최고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이를 소위 최고의 항변권(Einrede der Vorausmahnung: benefit of notification)이라 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앞서서 보증인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라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우선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Einrede der Vorausklage: benefit of discussion)을 함께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확인은행은 주채무자인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보증을 약속한 자라는 차원에서 확인은행의 법률적 지위는 연대보증자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보증인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수익자나 지정된 은행에 대해 이와 같은 항변권을 당초부터 취득하

47) 이와같은 보증인의 권리는 로마법 이래로 「선소(先訴)의 항변권」이라 하여 각국의 입법계가 인정해 왔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이를 각각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이라 지정하여 보증인의 이와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437조, 438조) : 이 두권리는 동일한 성립요건하에 하나의 권리로 이해된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pp. 611~612

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건재함에도 지정은행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 동시에 지급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행위인 것이다.

eUCP신용장거래에 있어 전자기록이 변형·손상·붕괴된 경우 지정된 은행이 당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한다는 것은 붕괴된 거래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언적 행동은 eUCP신용장상의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공히 두 당사자에게 “정황변경설명의 차원”에서 통지할 의무가 지정된 은행에게 있는 것이지만, 서류검토의 일시정지를 통한 기간의 유예라는 사실은 후발적으로 재제시된 전자기록이 eUCP신용장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인수·매입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서류검토가 연기되었다 할지라도 대금을 충당해줄기를 요청한다라는 “최고의 형태를 띤 지정은행의 의지의 표명”이므로 이러한 의지의 통지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최고·검색 항변권의 행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자신의 지급확약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설은행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통지하면 족한 것이지 부차적 위치에 있는 확인은행에게까지 동시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경우에 따라 개설은행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져있다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따른 변제능력은 그 자체로 무의미해져 개설은행에 당해 검토기간의 일시유예를 통한 대금충당 최고의 의사표시를 행할 필요성은 이미 소멸된 것이기에 그 시점과 상황에서는 확인은행에게만 이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자기록의 데이터 콘텐츠상의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재제시의 정황은 두 은행 모두에게 당연 통지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서류검토기간의 유예라는 사실은 예기치 않은 서류검토기간의 연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충당의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의 의사표시이므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이를 먼저 알려야 할 당사자와 후차적으로 알려야 할 당사자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eUCP 11조 b-ii)가 의도하고 있는 해석·적용방안은⁴⁸⁾ 이러한 법률적절차

48) 이 조항의 파생효과가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정된 은행 이외의 확인은행이 또 존재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개설은행의 재정상황이나 신용도가 상당히

와 현실적 개연성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각 상황별로 맞추어진 “한 은행(it)”이라는 용례를 통해 구체화 된 것이다

4. eUCP 11조의 궁극적 함의

1) 은행의 면책범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한편 또 하나의 문제는 eUCP 11조 전체를 놓고 볼 때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은행의 재량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과연 은행의 면책범위에 따른 재량행위로만 범주화 시킬 수 있는지는 비판의 제기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시각이 의미있다고 보는 것은 이 조항의 전면을 지배하고 있는 은행의 재량행위에 대한 수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eUCP 신용장거래는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은행은 그간 UCP규칙내에서도 광범위한 면책범위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면책내용의 근거에는 은행은 서류라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용장거래에 임하므로 그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든 또는 거래주체들과 제3자와의 사적인 계약의 내용이 되었든 관련없이 서류를 둘러싼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독립해 있다는 소위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신용장 거래당사자들에게 수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자기록에 관한 이와 같은 리스크는 신용장의 독립성 논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이러한 은행의 면책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면 더 이상 eUCP신용장거래는 이들로부터 수궁될 수 있는 효율적 거래방식으로 존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미한 때 개입하는 제3의 은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록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실무적으로 신용장금액만큼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취했다 해도 거래의 안정성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때 기간의 제약이 예기치않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장된다면 그 기간중의 개설은행의 신용도의 유동적 결과에 따라 확인은행의 위험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인은행은 그 피해를 줄이기위해 무조건적 확인을 조건부확인으로 변경한다든지 또는 확인을 축소·취소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려할 것이므로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2002)신용장조건들은 급작스런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의 이와같은 행동요령은 eUCP신용장의 조건변경없이 거래를 회복시켜 희망적인 의미로 이를 완료시킬 수 있는 방책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하겠다.

2) 중대한 위반으로서의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 리스크의 실체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세가지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이 리스크는 전자거래환경에 있어 어느 것으로도 포괄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손실위험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는 그 처리방식에 있어 은행의 재량은 개입할 수 없으며 오로지 개설의뢰인의 권리 포기(또는 하자변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해결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지정된 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오로지 개설의뢰인의 의사전달 통로의 역할만을 하므로 자신의 주도적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변형 내지 손상된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며, 요구한다 하더라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그 책임의 추궁을 받을 것이 명백함으로 위험회피적인 효용을 갖는 은행이라면 그 어떤 은행도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재제시의 결정을 내리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조 b항의 ii)에서는 지정은행의 재량에 따라 수익자에게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청하는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한정추리는 일부 타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

둘째, 이 리스크를 독특한 의미의 서류 불일치로 취급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오염된 전자기록은 서류의 불일치라는 등식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은행은 유효기일이 남아있다면 이를 신속히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수익자가 신속히 유효기일내에 전자기록을 다시 제시하면 은행은 재제시된 당해 전자기록이 eUCP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이 전자기록을 반드시 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자서류의 불일치 취급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eUCP 7조(b)항과는 엄밀히 구별되어 있고, 게다가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어떤 불일치 사항이 과연 서류검토기간을 일시 정지시키면서까지 보완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물음에는 응답하기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가정은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전통적 계약해석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⁴⁹⁾ 이 리스크를 신용장거래

49)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UCITA, UCC Section 2B(License)등의 법제정 기본정신은 전통적 계약해석의 원칙준용과 이의 전자메세지로의 확대적용에 있다.

에서의 약인의 완전파괴(total failure of consideration)로 간주하여 이를 소위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으로 범주화시키는 관점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해 계약을 존속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계약해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불완전계약이행으로 간주하고 하자의 보완을 특정기간내에(거래의 이행기일내에) 요구할 수도 있고, 별도의 통보나 조치없이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양방향의 권리체계를 취득한다. 결국 이는 전적으로 계약의 위반을 당한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eUCP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계약해제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불완전이행의 형태로 계약을 존속시킬 경우 이의 재제시 여부는 전자기록이 유효기일내에 완전치유가 가능하다는 전제와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은행의 호의에 의한 재량권 행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지만⁵⁰⁾, 만일 유효기일이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의 유효기일내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필연적으로 유효기일만료후의 제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서류검토기간의 일시정지까지 초래되므로 이로 인해 개설의뢰인은 적기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자기록의 제시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상업적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증폭되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의 이익은 예기치 않게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하겠다. 또 역으로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의 면책권 행사로 원천적으로 재제시가 봉쇄된다면 이 역시 개설의뢰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기록의 재제시 여부나 신용장거래의 해제 그자체는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또는 하자

이러한 접근방식은 eUCP의 입안에 큰 시사점을 부여했을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UCITA Section 701(b)에 따르면 중대한 계약위반이란 "(1)계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때, (2)계약의 위반내용이 합의의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것일 때, (3)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이 계약하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박탈할 우려가 있을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유효기일내에 이미 1차제시가 있었고, 유효기일에 많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의 재제시요청과 서류검토기간의 연장은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일의 의미속에는 기한내에 수차례의 보완기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서류치유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효기일이 남아 있다해도 은행은 이의 재제시를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하 참조.

면제)의 의사표시 여부와 은행의 재량권 행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결국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의 리스크를 전통적 계약원칙의 해석을 준용한 계약의 「중대한 위반」의 형태에 일단 범주화하고, UCP 14조 c)항의 규정을 결합시킴으로써 이의 궁극적 결정을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맡길 때 이의 의미는 당해 eUCP 11조의 전체 맥락구조에 가장 무리없이 부합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적용방안의 도출이 가능해진다 하겠다.

5. eUCP 11조의 적용과 효과

eUCP 11조상의 전자기록 특유의 리스크 발생을 「신용장거래에서의 중대한 위반」이라 범주화하고 이를 은행의 선택권부 규정에 투영해 본다면, UCP 14조 c)항의 규정에서처럼 개설의뢰인에 대한 하자면제교섭을 통해 후발적으로 거슬러 수익자에게 이의 재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당해 조항의 은행의 선택권부 규정은 무리없이 부합한다.

그러나 문제는 유효기일이 남아있어 치유기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은행이 개설의뢰인의 명시적 권리포기에 따른 수권없어도 독자적인 자신의 재량권행사에 따라 문제가 된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과연 일방적으로 요청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⁵¹⁾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효기일이 남아있고 수익자가 재제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일 때 이를 은행이 자신의 재량에 의해 허용한다면 논리적으로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는 서류의 불일치로 간주되어 당해 은행은 “의무적”으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유효기일내에 추후의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수용해야만 한다는 기간의 압박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⁵²⁾ 게다가 유효기일이 남아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서류치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소위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공평성(fairness)을 부여하기 위한 형평적 조치의 하

51) eUCP 11조 a)항과 b)항의 (i)은 유효기일의 여부와 관련없이 포괄적인 은행의 재량권의 행사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52) UCP 14조 d)항; eUCP 7조 b)항.

나로 인정되지만, 붕괴된 전자기록의 경우 무작위의 이와 같은 하자보완의 기회부여는 일단 유효기일전에 전자기록을 제시하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재제시를 당연 통보받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대 30일이나 되는 서류검토기간의 일시유예까지 이루어지는 혜택마저 공여됨으로써 수익자는 바이러스와 같은 제3의 인자를 퇴치·제거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은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노력을 전가하려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⁵³⁾

따라서 신용장거래계에서는 유효기일이 남아있다 해도 이를 단순히 은행의 재량에 맡겨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조항의 선택권부 규정의 또 하나의 함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은행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익자에게 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당해 지정 은행은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으로 부터의 항변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자체로서 수익자의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요컨대 본 조항에서의 재량권 활용은 스스로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은행에게만 한정될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러한 차원에서 전자기록의 변형·손상·붕괴는 유효기일의 경과여부에 관련없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 일단 eUCP신용장거래는 작동을 멈춘 상태에 돌입하지만, 은행의 재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또는 하자면제)의사에 의해서 다시 당해 거래는 존속될 수 있다는 취지를 eUCP 11조는 구현시키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⁵⁴⁾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전자기록의 리스크는 단순한 서류상의 불일치와는 달리 은행의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이를 치료·복구해야하는 등 비용과 그 피해가

53) 물론 경우에 따라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도 여러 이유에 따라 악의(bad-faith)로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수익자측면의 도덕적위험이 오히려 더 eUCP신용장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4) 따라서 전자기록이 변형·손상·붕괴된 경우 은행은 이의 재제시를 수익자에게 반드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강원진, 전제논문, p.255)는 일견 제한적 관점에서 수긍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은행의 재량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설의뢰인의 이익을 고려치 않은 친 수익자중심의 논리로 비약될 우려가 있어 타당치 못하다. 본 조항의 해석에 있어 당해 리스크의 본질과 수익자의 도덕적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그 제정의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심대한 리스크이다. 이 리스크는 결국 수익자로부터 그 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수익자 전담의 논리를 도입할 때만이 eUCP거래는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해 질 것이라는 가정을 eUCP 11조는 함의하고 있다 하겠다. eUCP 신용장거래에 있어 수익자는 전자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 리스크의 제거를 위해 모든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했음을 자신이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와 같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정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은 합리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본 조항을 통해 신용장거래계는 무역실무계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 연구결과의 시사점

최근 10년간 신용장거래관습은 유례없는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1993년 UCP 5차개정, 1996년 UCC-Article 5(신용장편)의 전면개정, 2002년 eUCP의 제정이 그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 오고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신용장거래방식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최근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커다란 성장 잠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제정된 eUCP는 신용장거래관습의 확대개편을 꾀하고 그 기술적 변용의 의지를 통해 신용장거래질서를 미래지향적 체제로 과감히 전환시킴으로써 거래주체들에게 당해 규범의 채택의 동기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 세기를 지배해왔던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이와 같은 노력이 차후에도 계속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무서운 흡입력을 갖고 등장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거래방식 내지 결제방식에 신용장은 그 제왕적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용장 통일규칙(UCP, eUCP)은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 그 반복성으로 인해 거래주체간에 승인되고 준수되는 보편적 거래관습으로 법적확신을 공여받은

디폴트 룰의 역할을 한다. UCP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eUCP를 중심으로 본 연구가 새로이 정의한 eUCP의 UCP에 대한 연결성·포섭성·동조성이라는 원리는 eUCP에 의해 인도되는 새로운 신용장거래질서를 이해하는데 가능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추출한 eUCP주요 조항들의 제반 해석기준들은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법조계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주리라 기대한다.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문구 하나 하나는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verba aliquid operari debent, debent intelligi ut aliquid operentur)’라는 법언은 모든 법규 해석의 황금율이다. 따라서 각 조항 하나 하나의 해석은 전체 맥락구조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각 조항들은 동일 법규내에서 무모순성을 보장하게 된다.

발효초기에 머물러 있는 eUCP의 현 시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가 추출한 제반 해석기준들은 사실과 동떨어진 가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자체 증명력을 갖는 사실들의 확인을 통한 귀납추리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시정·보충·조율하는 평균율로서의 기능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연의 공평무사한 법칙으로부터 인간이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정교한 제반 법체계가 존재한다는 법철학자 예링의 통찰에서처럼, 신용장 관련 모든 법규나 규칙속에는 원류와도 같은 법칙성이 예외없이 존재한다. 그 원류의 법칙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면 이 위계구조속에 실무계의 관행이 보충되는 과정을 거듭하는 바, 이와같은 특유의 법칙성에 따라 입증된 새로운 질서들에 순응하는 관행들만이 모든 거래주체들에게 수궁가능한 행동준칙이 된다.

eUCP에 대한 접근 역시 이와같은 사실들의 발견과 질서의 창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실무계의 관행을 포섭해가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원진, “전자적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1호, 2002, 5.
- 김기선, “1995 미통일상법전 제5조의 개정과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에 주는 효과분석,” 무역학회지, 제22권 3호, 한국무역학회, 1997.
- , “효율적거래 포트폴리오의 선택에 의한 국제간 상거래방식의 전략적 활용방안,” 통상정보연구, 제3권 2호, 2001, 12.
- 김영훈, “전자적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1호, 상사법학회, 2002, 6.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 대한상공회의소, eUCP : 전자적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 ICC한국국내위원회, 2002, 4.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2001.
- 박성철,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하계발표논문집,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6.
- 박세일, 범경제학, 박영사, 2002.
- 요하네스 짜안(강갑선 역), 무역결제론, 법문사, 1976.
- 최석범,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 Byrne, James E., “Revised UCC Section 5-108(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CCLJ*, Spring, 1997.
- Cameron, Bill, “eUCP,”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7, No.3, July-Sept., ICC Pub. S. A., 2001.
- Dattu Zahoor N., “eUCP Watch:Are the Bank Ready?,” *LC Monitor*, Vol.4, Issue 4, April, 2002.
- Gatt M. Margaret, “Maximizing Profita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2, 1998.
- Guest, A. G., *Anson’s Law of Contract*, 26ed., Clarendon Press, 1984.
- Harfield, Henry,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ledge & Keegan,

- Paul, 1982.
- Howarth, William, "Contract, Reliances and Busin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7.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S. A., 1989.
- ICC, *eUCP: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 1.0, ICC Pub. S. A., 2002.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S. A., 1991.
- ICC, *Opinions(1989-1991) of the Banking Commission*, ICC Pub. S. A., 1991.
- Kozolchyk, Boris, *Commercial Letter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 1977.
- Mandell, Gary, "Export Credit Insurance : An Effective Marketing and Financing Tool,"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 Mandel, Michael, "The Coming Internet Depression," *Basic Books*, 2000.
- Mattis, John F., "Export Payment Terms Adjust the Risk to Exporters and Cost to Importers,"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 Pollock. F., *Principles of Contract*, 7th ed., Fred B. Rothman & Co., 1988.
- Rosenblith, Robert M.,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ccount Party:Unexplored Legal Problems," *Brooklyn Laws Review*, Vol.56, 1990.
- Samuelson, Pamela & Hal R. Varian, "The News Economy and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SIMS Working Paper*, Univ. of California, Berkeley, July 18, 2001.
- Schmitthoff, Clive M., "International and Procedual Aspects of Letter of Credit," *Studies in Transnational Economic Law*, Kluwer, 1987.
- Schwarzenberger, George,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Stevens & Sons, 1967.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f Uniform State Laws, 2001.
- Ventris, F. 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 VerLoren Van Themaat, Peter,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Hage, 1981.

ABSTRACT

Some Implications of eUCP Based on the Hermeneutical Approach

Kim ki sun

With the current evolution from paper to electronic records the documentary credit market has been looking to ICC to provide guidance in this transition. To allow bankers and trade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is trend, eUCP has come into force from April 1st 2002.

The eUCP provides definitions to allow current UCP terminology to accommodate the presentation of the equivalent of paper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to provide necessary rules to allow the UCP and eUCP to work togeth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many of the Articles of the UCP are not impacted by 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equivalent of paper documents and do not require any changes to accommodate electronic presentation. When read together the UCP and the eUCP will be broad enough to allow for developing practice in this area.

The eUCP is not a revision of the UCP. The UCP will continue to provide the industry with rules for paper letters of credit in conjunction with the eUCP.

This study comments that some characteristics of the eUCP have unique properties, such as juncture, envelope, homotheticity functions, and some applicable interpretations including abstraction of letter of credit, notice of completeness, notice of discrepancies and corruption of electronic records.

Keywords : eUCP, Letter of Credit